

본인확인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유가증권 수탁약정서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

지점(부)앞

귀 행의 「유가증권 수탁약정서」상의 약정사항을 준수하고 유가증권 추심·수탁업무에 관련된 귀행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년 월 일

추심대전 입금계좌번호		거래인감 (또는 서명)	
신청인 성명(예금주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주소 (선택 또는 전부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 :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 :		
연락처 (선택 또는 전부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 :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 : 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폰 :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:	보관어음 월별 잔고 현황 통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<input type="checkbox"/> FAX

약정사항

- 귀행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본인(당사)의 어음, 수표 등을 수탁, 보관, 추심, 입금, 반환함에 있어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변조, 변질 또는 기타 불이익 발생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본인(당사)이 지겠습니다.
-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,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,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.
- 귀행은 본인(당사)으로부터 수탁한 유가증권이 기재요건의 누락, 배서불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본인은 보관어음 수탁수수료 및 격지간 추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심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추심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.
- 보관어음을 반환 신청하는 경우 귀행은 '위탁유가증권 반환청구서'상의 인감(또는 서명)과 유가증권 수탁통장 인감(또는 서명)을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·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보관어음을 반환한 경우에는 인감(또는 서명)의 위조, 변조, 도용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도 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이 약정을 귀행의 영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해지 통보를 받는 즉시 유가증권수탁통장을 귀행에 반환한 후 귀행에 보관되어있는 미추심 유가증권을 반환 받겠습니다.

